

의안번호	2208086
의 퇴 인	김영배의원
회 답 일	2025. 2. 27.
추계번호	25A0883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다음과 같이 추계됨
- 시나리오 1(지원비율 50%) : 총 1,184억 2,500만원(연평균 236억 8,500만원)
 - 시나리오 2(지원비율 30%) : 총 710억 5,500만원(연평균 142억 1,100만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(안 제8조의3)	시나리오 1	16,685	20,185	23,685	27,185	30,685	118,425	23,685
	시나리오 2	10,011	12,111	14,211	16,311	18,411	71,055	14,211

주: (시나리오 1)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금액의 50%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

(시나리오 2)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금액의 30%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3 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)	「유료도로법」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같은 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(제1항)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3 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,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의3 신설)
-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「유료도로법」 및 동법 시행령¹⁾에

1) 유료도로법 제15조(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)

-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·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 차량,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,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
 2. 「도로교통법」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(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)

-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"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.

9.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

따라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할 계획이며²⁾ 정부는 통행료 미인상, 명절 면제 등의 수입 손실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

－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현황은 [표1] 과 같음

[표 1] 환경친화적 자동차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
재정고속도로 감면금액 계	425,868	490,029	482,535
(환경친화적 자동차 할인금액)	(29,343)	(43,450)	(58,161)
민자고속도로 감면금액 계	128,410	154,293	153,031
(환경친화적 자동차 할인금액)	(12,913)	(20,460)	(26,371)
합 계	554,278	644,322	635,566
(환경친화적 자동차 할인금액)	(42,256)	(63,910)	(84,531)

자료: 국토교통부

－ 정부는 이 중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미인상, 명절 면제 등으로 인한 수입 손실분에 대해서만 민자도로운영지원(1831-301)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하고 있으며, 예산현황은 [표2]와 같음

③ 제1항·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감면대상차량의 요건(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.

2의2. 통행료의 100분의 40: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

3. 통행료의 100분의 30

가.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차량

나.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

4. 통행료의 100분의 20

가. 제1항제6호의 차량(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)

나.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

2)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2025년 40%, 2026년 30%, 2027년 20% 등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할 계획임

[표 2] 민자도로운영지원(1831-301)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 - 내역사업명	2023년 결산	2024년 예산	2025년 예산안
민자도로운영지원	95,619	173,328	191,597
- 민간경상보조	93,026	171,128	189,397
- 민간위탁사업비	2,593	12,621	13,650

주 :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항목에는 통행료 미인상분, 명절 통행료 면제분 등을 포함
자료: 국토교통부

-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, 정부 목표인 ‘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’ 보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료 감면율을 50%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
- 비용추계 대상은 국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의 민자고속도로 감면 금액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때 발생하는 재정지원 금액이며, 국가의 감면액 지원 비율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추계함
 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민자고속도로 감면액의 최근 3개년의 평균 증가 금액(연 7,000억원)이 매년 증가함을 가정함
 - (시나리오 1) 민자고속도로 감면 금액의 50%를 지원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총 1,184억 2,500만원(연평균 236억 8,500만원)이 소요됨
 - 현재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미인상, 명절 면제 등으로 인한 수입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대상은 민자고속도로 감면액으로 한정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시나리오1) 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환경친화적 자동차 민자고속도로 감면액	33,370	40,370	47,370	54,370	61,370	236,850	47,370
감면 지원액 - 지원비율 50%	16,685	20,185	23,685	27,185	30,685	118,425	23,68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시나리오 2) 민자고속도로 감면 금액의 30%를 지원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총 710억 5,500만원(연평균 142억 1,100만원)이 소요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시나리오2) 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환경친화적 자동차 민자고속도로 감면액	33,370	40,370	47,370	54,370	61,370	236,850	47,370
감면 지원액 -지원비율 30%	10,011	12,111	14,211	16,311	18,411	71,055	14,21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함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nabo.go.kr